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朴 有 煥

해외투자연구소 조사역

- I.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추진 경과
- II.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 III. 제1, 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비교
- IV.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 V.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I.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추진 경과

정부는 4월 30일 對북한 투자규모 상한선 철폐 및 투자분야 제한 완화,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제2차 南北經協 活性化措置를 발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1994년 11월의 북한 핵문제 타결 이후 이루어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이다.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정부의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추진 방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방침은 신정부 출범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統一分野 7대 추진과제로 선정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신정부가 수립한 대북정책의 세부 추진방향중 하나로 구체화되었다. 이번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

〈표 1〉

‘국민의 정부’ 對北政策

대북정책 목표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대북정책 3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통일 배제 ◦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대북정책 추진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대북정책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자료 :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5.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활성화방안이 확정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되었다.

II.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①남북경제협력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民間主導의 經濟協力を 推進하고, ②정부는 경제협력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經濟協力推進 與件 造成에만 주력한다는 기본방향하에서, ①기업인의 북한주민 접촉과 북한 방문, ②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물자교역, ③경제협력사업의 세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기업인의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 방문

이번의 조치에서는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한측의 招請狀(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서

류) 등 방북요건만 구비되면 기업인의 北韓 訪問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며, 특히 그동안 시범사업 위주의 경제협력 추진방침과 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에 북한 방문이 제한되었던 大企業 總帥 및 經濟團體長의 방북도 허용되고 있다. 또한 協力事業者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되던 수시방북 제도를 기업인의 협력사업 협의 및 타당성조사는 물론 물자교역·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북한 방문 등에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해서는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아울러 민원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 방문 승인처리 기간을 북한주민 접촉의 경우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북한 방문은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하였다.

2.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남북물자교역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南北交易 대상물품중 '승인을 요하는 품목'(205개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반입이 가능한 '包括承認品目'으로 지속적·단계적으로 확대,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유통생산설비의 무상 및 임대차 방식의 설비반출을 허용하고, 생산설비 반출 1회 승인한도(현행 1회 100만 달러, 연간 300만 달러)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제한을 폐지하여 委託加工交易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3. 남북 경제협력사업

남북 경제협력사업 즉, 對北投資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소규모 시범적 사업위주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500만~1,000만 달러의 범위내에서만 허용하던 對북한 투자규모의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아울러 對북한 투자업종의 선정에 있어서도 일부 업종만의 투자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방식에서 최소한의 업종만을 투자제한업종으로 지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 전환하여 ①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하

<표 2>

제2차 南北經協 活性化措置의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기 본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제협력 추진 ◦ 정부는 경제협력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 	
세부 추진대책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을 원칙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 ◦ 승인처리기간 단축
	남북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시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 목'의 자속적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남북경제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化 ◦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거나¹⁾, ②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만 對北投資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북한측 사업상대자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인 經濟協力事業者 승인을 받은 후, 경제협력사업자가 對北投資를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인 經濟協力事業 승인을 받는 2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활성화조치에 따라 ① 300만 달러 이하의 경제협력사업, ②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③ 남북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은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I. 제1, 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주요 내용 비교

1994년 11월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북·미 핵협상에 의해서 타결된 후(1994.10.21) 그동

1)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라 함은 ①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과 ②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을 지칭함.

안의 핵·경협 연계정책²⁾을 완화하는 南北經協 活性化措置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법·규정들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로 유보되었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①企業人 訪北 및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②위탁 가공용 施設財 搬出 許容 및 기술자 방북 허용, ③시범적인 經濟協力事業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制度的 장치가 마련된 후에는 분야별로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별 경제협력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1, 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각각 기업인의 북한 방문, 남북교역, 경제협력사업분야에서의 각종 規制 緩和 및 節次 簡素化 등의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분야별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인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제1차 활성화조치에서는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등의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만을 허용하였으나, 제2차 활성화조치에서는 방북요건 구비시 기본적으로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방북과 대규모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도 허용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는 남북교역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위탁 가공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제1차 활성화조치에서는 위탁가공용 시설재의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제2차 활성화조치에서는 국내 유휴생산설비의 무상반출·임대허용 등 생산설비 반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경제협력사업 실시와 관련해서는 제1차 활성화조치에서는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만을 허용하였으나, 제2차 활성화조치에서는 투자규모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부 전략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업종을 전면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단계적인 경제협력 추진방침을 표명하였다면, 이번의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2) 정부는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시킴에 따라 1993년 6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핵문제 해결시까지 유보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표 3〉

제1, 2차 南北經協 活性化措置의 주요 내용 비교

	제1차 활성화조치	제2차 활성화조치
기업인의 북한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소규모 방북 허용 ◦ 민간차원의 북한 경제인 초청허용 ◦ 위탁기공교역을 위한 기술자의 북한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요건 구비서, 승인을 원칙으로 함.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유효 기간 확대 ◦ 승인처리기간 단축
남북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의 제한적 반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시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 위탁기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 제한 폐지
남북경제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민간차원의 북한 지역사무소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동시 승인 제도 도입
법·규정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제정) ◦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제정)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예정)

적인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아울러, 南北經濟交流協力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南北經協 活性化措置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신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한간의 經濟協力 擴大를 통해 南北關係 改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신정부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의 조치는 현행 법률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경제협력관련 승인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전향적인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경협이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당국간의 협상에 의한

남북경협과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경협을 엄격히 구분하고, 당국간 협상에서는 정치우선의 논리를,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에서는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통하여 정부가 당국간의 관계에는 相互主義原則을, 민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政經分離原則을 적용할 것임을 명백히 밝힘에 따라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³⁾.

한편 이번의 조치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결국 남북경협의 규모·분야 확대를 의미하는 바, 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IMF管理體制에서도 이번의 조치들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협분야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공식발표 이전 논의되었던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금융지원 등 일부 부분들이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하여 그동안 불허되었던 대기업 총수의 방북 허용에 따라 민간 기업의 대북투자 업종이나 투자규모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종 방북관련 절차 등의 간소화로 기업인들의 방북이 활발해지고 경협관련 활동폭도 크게 넓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여 방북하는 현행의 高費用 訪北方式을 대체할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남북한 기업간 직접통신방식 등의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대상 품목中 包括承認品目 擴大措置는 반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되나, 포괄승인품목이라도 국내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긴급 搬入制限措置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 제한을 폐지하고 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동안 委託加工交易 活性化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物流費用 節減을 위한 조치와 위탁가공용 생산설비 원부자재 반출시 金融支援 등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아 생산설비의 반출만으로는 큰 효과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유휴설비 포함)의 반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들의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휴생산설비의 북한 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構造調整 차원에서 자체 유휴설비를 북한에 반출하거나, 도산한

3) 1994년 11월의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이후 북한은 즉각 중앙통신 보도와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협 활성화방침을 비난하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그러나 이번 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영이나 거부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국내기업의 유휴설비를 구입하여 북한에 반출할 경우 설비반출금액에 대해서 南北協力基金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1차 활성화조치시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示範的 段階로 규정하고 ①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②단기간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③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의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小規模의 투자만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대북 투자규모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고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은 대폭 완화하여 본격적인 대북투자가 가능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投資保障協定이나 二重課稅防止協定이 맺어진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이번 활성화조치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한간의 별도의 제도적 장치없이도 기업의 대북진출 및 대북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자율적 판단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상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가 기대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通信 및 運送體系 未確立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 代金決済制度 미구축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경협관련 애로사항들이 해결되고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애로사항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이미 남북한이 합의한 바 있는 南北基本合意書의 이행과 실천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대로 남북한간의 直航路를 개설하고 육로수송을 위한 철도를 연결하며, 물자교역 대금 결제는 清算決済方式을 도입하고, 남북한간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과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이 대부분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⁴⁾.

이미 신정부도 南北基本合意書의 履行 및 實踐을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상정하고 적극

4) 남북기본합의서란 1991년 12월에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약칭이며, 이 합의서에 따라 교류협력부분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한 부속합의서도 작성, 발효된 바 있음. 그러나 기본합의서와 함께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핵사찰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와 접촉이 단절되어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표 4>

남북교류·협력부문 附屬合意書 經濟分野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기 본 추 진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 ◦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시자는 법인이 원칙이나 개인도 가능 ◦ 경제협력과 물자교류는 당시기간에 직접 계약 체결로 실시 ◦ 경제협력사업은 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영·합작사업을 포함 ◦ 남북한은 경제교류협력 참가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 보장 ◦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내부교류로 실시 ◦ 교류물자 가격은 국제시장가격 고려, 당시기간 협의로 결정
물 자 교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 쌍방합의로 다른 결제방식 가능 ◦ 남북물자교류에 대하여는 무관세 부과 ◦ 교류물자는 쌍방 합의로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
합 영 · 합 작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 합영 합작사업 실시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결정 ◦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 개설 -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 - 김포공항과 순안(평양)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
수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문점을 통해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
통 신	

자료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기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에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과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간의 협의를 통한 부속합의서 내용의 이행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부속합의서 이행전이라도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南北協力基金 支援을 포함한 추가적인 활성화조치가 뒤따라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V.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1. 남북경협 활성화조치(1994.11.)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 동향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외형상의 성장과

아울러 내용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교역·협력사업 협의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企業人的 訪北이 재개되었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生產設備의 搬出과 시범적인 經濟協力事業 승인도 이루어졌다.

가. 기업인의 북한 방문

1994년 11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직후 쌍용그룹 북한투자환경 조사단의 북한 방문이래 1997년 말까지 60개 기업, 316명의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1998년 들어서도 4월까지 39명의 기업인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그러나 제1차 활성화조치시 민간차원에서의 북한경제인 초청 허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남한방문은 1994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남북교역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다소간의 부침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1998년 4월말까지 남북교역 총규모는 15억 9,07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1995년에는 연간교역규모가 2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년대비 47.7%의 交易增加率을 기록한데 이어, 1997년도에는 연간교역규모 3억 달러를 돌파하는 양적 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다.

〈표 5〉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企業人的 北韓訪問 현황(1994.11. ~ 1998. 4.)

(단위 : 건, 명, %)

	전체 방북(A)		경제인 방북(B)		경제인 비중(B/A)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1994	1	12	1	12	100.0	100.0
1995	53	539	25	109	47.2	20.2
1996	28	146	22	84	78.6	57.5
1997	136	1,015	45	1,127	33.1	12.5
1998	56	340	15	39	26.8	11.5
계	274	2,052	108	371	39.4	18.1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에 의거 작성.

〈표 6〉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동향

(단위 : 천 달리, %)

연도	반 입			반 출			계		
	금액	위탁가공	비율	금액	위탁가공	비율	금액	위탁가공	비율
1989	18,655	-	-	69	-	-	18,724	-	-
1990	12,278	-	-	1,187	-	-	13,465	-	-
1991	105,722	-	-	5,547	-	-	111,269	-	-
1992	162,863	638	0.4	10,563	200	1.9	173,426	838	0.5
1993	178,166	2,985	1.7	8,425	4,023	47.8	186,591	7,008	3.8
1994	176,298	14,321	8.1	18,248	11,342	62.2	194,546	25,663	13.2
1995	222,855	21,174	9.5	64,435	24,718	38.4	287,290	45,892	16.0
1996	182,399	36,238	19.9	69,638	38,164	54.8	252,037	74,402	29.5
1997	193,069	42,894	22.2	115,269	36,275	31.4	308,338	79,069	25.6
1998	21,563	10,574	49.0	23,516	7,842	33.3	45,079	18,417	40.9
계	1,273,869	128,824	10.1	316,900	122,466	38.6	1,590,769	251,289	15.8

주 : 1998년은 4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 〈표 5〉와 동일.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위탁가공교역 개시이래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에는 위탁가공용 生產設備 搬出⁵⁾ 허용 등에 힘입어 연평균 50%에 가까운 교역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높은 교역증가율과 아울러 전체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委託加工交易이 남북교역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그러나 최근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남북교역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1998년도 1~4월중 총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53.1%, 11.6% 감소하였다.

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고합물산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필두로 1998년 4월말까지 모두 32개 기업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경제

5)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북한으로 반출된 위탁가공용 생산설비로는 TV스피커조립라인과 봉제 완구가공설비가 있음.

6) 1997년도 위탁가공교역 비중은 총교역에서 경수로물자, 對북한 무상지원, KEDO 지원 重油를 제외한 실질교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남북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1998년 4월말 현재)

(단위 : 만 달러)

기 업	협 력 사 업 내 용	금 액	승 인 일
대 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9개 사업	..	1992.10.5
고 합 물 산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686	1995.5.17
한 일 합 섬	쉐타, 봉제, 방적 등 4개 사업	980	1995.6.26
국 제 상 사	신발	350	1995.6.26
녹 십 자	의약품(유로키나제)	300	1995.9.15
동 양 시 멘 트	시멘트 싸이로 건설	300	1995.9.15
동 룡 해 운	하역설비(크레인 등)	500	1995.9.15
삼 성 전 자	라진선봉 통신센타	700	1996.4.27
태 창	금강산 샘물 개발	580	1996.4.27
대 우 전 자	TV 등 가전제품 생산	640	1996.4.27
한 국 전 력 공 사	경수로 건설지원사업(PWC)	4,500	1996.7.19
미 흥 식 품	수산물 채취·가공	15	1997.5.22
신 일 피 혁	피혁·의류·봉제	300	1997.5.22
한 화	PVC장판 제조	90	1997.5.22
LG 전 자 / LG 상 사	전자제품(컬러TV)조립생산	450	1997.5.22
한 국 통 신	경수로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	..	1997.8.1
삼 성 전 자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500	1997.8.1
코 오 롱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생산	400	1997.8.1
신 원	의류·봉제사업	100	1997.8.1
파 라 우 수 산	수산물 생산·가공	300	1997.8.1
금 오 식 품	냉면 고구마전분 제조	40	1997.8.1
한 국 토 지 공 사	라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	1997.10.14
대 상 물 류	라진·선봉 국제물류유통기지 개발·운영	420	1997.10.14
삼천리자전거/LG상사	자전거 조립·생산	800	1997.10.14
태 영 수 산 / LG 상 사	가리비 조립·생산	200	1997.10.14
한 국 외 환 은 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1997.11.6
아 자 커뮤 니 케 이션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20	1997.11.14
에 이 스 침 대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	425	1998.1.9
롯 데 제 과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575	1998.1.9
광 인	옥외광고	250	1998.2.18
안 성 개 발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생산 및 판매	50	19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라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	800	1998.4.8

자료 : 〈표 5〉와 동일.

〈표 8〉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1998년 4월말 현재)

(단위 : 만 달러)

기 업	협 력 사 업 내 용	금 액	승 인 일
대 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512	1995. 5.17
태 창	금강산 샘물 개발	580	1997. 5.22
한 국 통 신	북한 경수로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	..	1997. 8. 1
한 국 전 력 공 사	경수로건설 지원사업(PWC)	4,500	1997. 8.16
한 국 외 환 은 행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1997.11. 6
녹 십 자	혈전증 치료제(유로카나제) 제조사업	311	1997.11.16
아자커뮤니케이션	인쇄 TV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을 제작	편당 25	1998. 2.18
미 흥 식 품 산 업 사	북한수산물 채취 가공 양식 및 판매	47	1998. 3.13

자료 : 〈표 5〉와 동일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중 대기업이 13개 기업, 중소기업이 14개 기업, 기타 5개 기업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대북투자 추진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7년중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진출하는 2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도 이루어졌다.

한편 교역에 비해서 정치적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는 1998년 4월말 현재 (주)대우, (주)태창, (주)녹십자, (주)아자커뮤니케이션, 미흥식품산업사 등 5개 민간기업과 輕水爐支援事業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외환은행 등 3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8개 기업이 경제협력사업을 승인받아 사업을 실제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가동중인 경제협력사업은 경수로 관련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 한건에 불과하며, (주)태창의 금강산샘물합영회사는 최근 공장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수로공사관련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중 한국전력공사는 1997년 8월 부지정지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이며, 한국통신은 경수로부지공사지역과 한국전력공사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실시중이며, 한국외환은행도 경수로공사부지내에 금호출장소를 개설하여 송금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다.

2.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른 IMF관리체제하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최근의 남북교역동향에 비추어 보면 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의 여파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환율 상승과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실질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搬入에서의 減少가 두드러지며(금년 1~4월중 전년동기대비 68.2% 감소), 委託加工交易도 환율상승에 따른 제조원가(임가공비 및 물류비용 등)의 상승,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특히 외환위기 발생 이후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 반출의 감소폭(금년 1~4월중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위탁가공 반입물량의 축소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내 예년의 위탁가공교역 규모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活性化措置에 따라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과 기술지도 및 품질검사를 위한 기술자의 방북 등이 이루어질 경우 委託加工交易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의 안정과 국내 내수 시장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위탁가공용 국내 유통생산설비의 무상반출·임대허용으로 위탁가공품목이 전자·기계조립 등의 高附加價值 제품으로 품목의 다변화는 이루어지겠지만, 위탁가공교역시의 과다한 物流費用과 技術移轉 및 品質檢查 등의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역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도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들이 收益性 위주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장기적인 시장확보와 기업이익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대북투자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도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의 사업재편과 아울러 국내외 차입금리 상승으로 投資財源 확보마저 곤란하여 당장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對북한 투자사업은 투자규모가 축소되거나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더구나 일부 부실기업의 경제협력사업은 전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 허용과 대북투자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의 분야와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내에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협력사업을 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投資保障, 二重課稅防止 등)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로 착수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투자여력을 회복하고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이번의 활성화조치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진다. ♦